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식품의약품안전처	보 도 자 료		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보도일시	배포 즉시	배포일자	2021. 9. 1.(수)
담당과장	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오영진 (☎043-719-2252)	담당자	김현정 사무관 (☎043-719-2255)

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급식소 위생·영양지원 강화

-「사회복지시설급식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노인·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**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안**을 **9월 1일 입법예고**한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이번 제정안은 지난 7월, **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'사회복지시설급식법')」** ('21.7.27제정·공포, '22.7.28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▲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'지역센터')의 **업무범위와 지원방법** ▲지역센터에 대한 **지도·감독과 평가 방법·절차** ▲지역센터 **운영 위탁**과 **실태조사 범위** ▲**소규모 급식소**의 지역센터 **등록 절차**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**(업무범위와 지원방법)** 지역센터는 **영양사가 없는 노인·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***에 **위생적 시설관리**와 **이용자별 맞춤형 영양관리**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 **소규모 급식소**의 **위생향상**과 **이용자**의 **영양**을 **개선**합니다.

* 노인·장애인 시설 급식소 11,569개소 중 8,544개소(73.9%)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 제공

- 또한 **영양사와 위생 담당자가**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**소규모 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**을 두며, 위생·영양 교육 등 지원업무에 대한 **비용**은 **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**할 계획입니다.

- 참고로「사회복지시설급식법」 제정에 따라 **지역센터의 영양사 등은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까지의 전 과정에서 위생·영양관리 지도**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급식소를 지원하게 됩니다.

○ **(지도·감독 및 평가)** 지자체는 관할 지역센터가 급식관리, 위생·안전관리 등을 **적절하게 수행하는지**를 **철저하게 지도·감독**합니다.

- 아울러 **급식소**에 대한 **만족도**와 **운영에 관한 사항 등**을 **평가**해 지역센터가 **양질의 서비스**를 **제공**할 수 있도록 **유도**해 나가겠습니다.

○ **(지역센터 운영 위탁과 실태조사)** 지자체가 지역센터를 직접운영하거나 **보다 전문적인 지원**을 할 수 있도록 **지역센터 운영**을 식품관련 대학 등 **전문기관에 위탁**할 수 있습니다.

* 지자체가 기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(법 제5조제2항)

- 한편 식약처는 **급식소의 운영과 위생·영양관리 현황** 등에 대한 **실태조사**를 **전문기관**에 **의뢰해**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급식소의 **위생수준 및 영양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**할 계획입니다.

○ **(등록절차)** 위생·영양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 급식소는 관할 지역센터에 **등록신청서를 제출**하고, 지역센터는 **등록증을 발급**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**노인·장애인 등 소규모 단체급식소**에 대한 위생과 영양 지원을 강화해 **사회취약계층**에게 **안전**하고 **영양 있는 급식**을 **제공**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○ 참고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붙임> 1.「사회복지시설 급식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
2. 노인·장애인 등 급식소 지원체계도

- 1 -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안

1 지역센터 업무 및 세부운영 사항(시행령·시행규칙)

구 분	제정안
지역센터 설치 · 운영 비용 보조 (시행령 제3조)	• **(보조항목)** 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 급여 및 임대료, 급식소 식재료 구매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비용,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교육 · 지도 필요 비용 등
지역센터 업무 (시행규칙 제2조)	• **(업무)**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 관리카드 작성 및 영양 평가 · 지원, 식재료 구매 · 관리 등 정보 제공 및 위생적 시설관리 지원
지역센터 운영 (시행규칙 제3조)	• **(인력기준)** 지역센터 별 지원대상 **급식소 20개당 영양사 및 위생담당자 각각 1명 이상** • **(영양사 등 업무)** - **영양사:** 급식소 **식단**작성, **식재료** 구매 · 검수 · 조리 · 배식 지도, 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**영양지도** - **위생업무 당당자**: 식품 등의 **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관리 지도**, 종사자의 **위생교육 및 개인위생 지도**

2 지역센터 감독 및 평가(시행규칙)

구 분	제정안
지자체의 지역센터 지도 · 점검 (시행규칙 제4조)	• **(지도 · 점검 사항)** **식재료 관리**, 식단구성, 조리 · 배식 등 **급식관리**, **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 · 안전 관리**, 위생 · 영양 · 안전에 대한 **지도 · 관리 및 교육**
지역센터 평가 (시행규칙 제2조)	• **(식약처)** **평가계획 및 기준**을 수립 · 통보 • **(지자체)**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, 급식소의 만족도,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**평가 실시**

3 지역센터 위탁 및 실태조사(시행령·시행규칙)

구 분	제정안
지역센터 운영 위탁기관 (시행령 제2조)	•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**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**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**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**
실태조사 기관 · 내용 (시행규칙 제6조)	• **(의뢰기관)** 단체급식에 관한 **전문인력 ·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** • **(조사내용)** 사회복지급식소 운영현황 및 위생 · 영양 관리 현황,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지원만족도 · 요구사항, 식생활 교육 현황

4 기타 행정사항(시행규칙)

구 분	제정안
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(시행규칙 제7조, 서식제1호부터 제5호)	• 급식소의 **센터 등록 · 변경* · 종료 절차** 및 센터의 등록 **급식소 정보 관리 방법** * 급식소의 대표자, 명칭, 설립주체, 소재지,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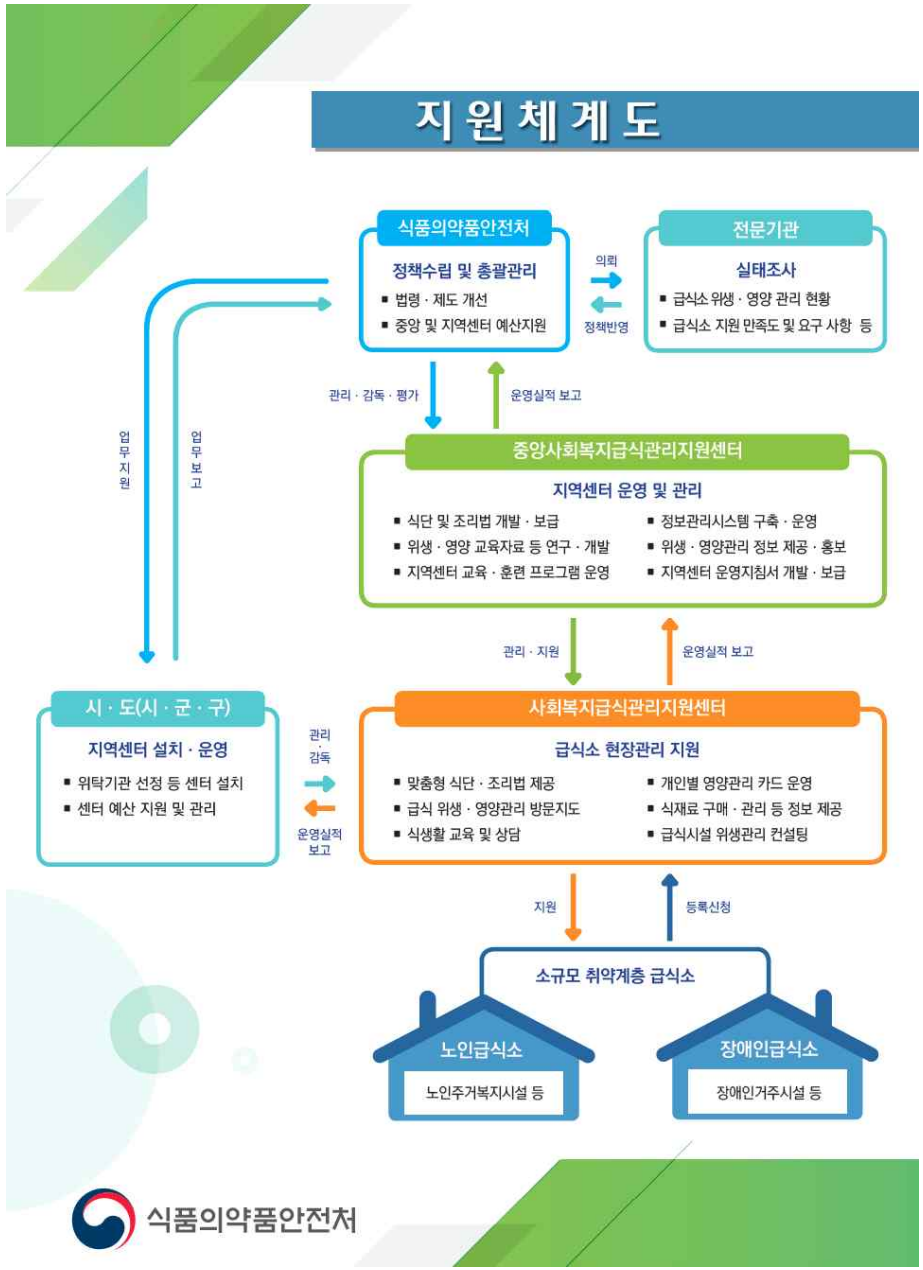
붙임2 노인 · 장애인 등 급식소 지원체계도